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9일,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원이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허가·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0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자의 소규모 설비 변경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 수리권자를 최초 허가권자로 일원화하며, 경영권 지배 목적의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전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편법적인 쪼개기 증설을 차단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인·허가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가 전력 수급 예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타 법령(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와의 선후 관계를 두고 지자체와 주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바, 편법 증설은 통제하되 발전사업자에게 이중 규제나 과도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될 신고 대상 및 수리 기준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재원을 이미 확보하고 타 안전관리 시스템과의 차별화 및 정보 연계 방안을 적절히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전력계통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본연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